

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 시험·검사기관 의뢰 안내

□ 배경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규칙 제30조 [별표9] 제3호 가목 1). (총리령 제1885호, '23.6.9. 공포) 개정·시행 관련 시행 일자 및 내용 안내

⇒ (내용) 수입식품 등 등급별 정밀검사* 대상[참고]은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

* 최초 수입, 부적합 제품(5회), 기준규격 신설·강화 제품, 특별관리영업자 수입제품 등

□ 시행 일자 : 2023년 12월 10일부터 (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)

□ 개정 사항

| | |
|--------|---|
| 기 준 |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민간 시험·검사기관* 중에 선택하여 검사의뢰 가능 * [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] ① 한국식품과학연구원,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원, ③ (주)한국분석기술연구원, ④ 한국기능식품연구원, ⑤ 한국에스지에스(주), ⑥ (주)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, ⑦ (주)캠바이오 <지정번호 순> |
|--------|---|



| | |
|--------|--|
| 변 경 |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(수익자부담원칙)하는 정밀검사에 대해 민간시험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가능 * 다만,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(마약이나, 검사장비 및 시약 등이 없는 경우) 지방식약청에 의뢰 가능 |
|--------|--|

□ 참고 사항

○ 지방식약청(시험분석센터 등) 수행 업무

- 수입식품의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른 본부지시 검사나 무작위 표본검사

* 이 경우도 방사능 및 마약류 검사를 제외한 그 외 검사는 영업자가 민간기관 선택 가능

- 그 외 국내 식품·의약품·화장품·의약외품 등 검사와 연구사업 등 수행

★ [붙임] 민간시험·검사기관 활용 확대 관련 업무 처리 지침(Q&A)

붙임

민간 시험·검사기관 활용 확대 관련 업무 처리 지침(Q&A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·시행으로 영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의 민간 시험·검사기관 활용 확대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업무 처리 지침(Q&A)를 알려드립니다.

Q 1.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유는 무엇인가요?
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3조(책무)에 의거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의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,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의무가 있으므로
 -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입 영업자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정밀검사는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, 정부는 위해 우려 품목 또는 감시(모니터링)검사 등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, 동 내용은 모든 수입식품등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.
- *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0조 [별표9] 제3호 가목1) → 개정·공포('23.6.9) → 시행('23.12.10, 수입신고일 기준)

Q 2. 민간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의뢰하여야 하는 정밀검사는?

○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*는 원칙적으로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, 정밀검사 대상은 아래 1~3등급 수입 식품등이 해당됩니다.

* 최초 수입 제품, 부적합 재수입 제품(5회), 기준규격 신설·강화 제품, 특별 관리영업자 수입 제품 등

▶ 민간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의뢰해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

| 구 분 | 세부 내용 |
|-----------|---|
| 1등급 수입식품등 | 1)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2)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·강화된 수입식품등 3)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*하였거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*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확인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5년을 계산함 |
| 2등급 수입식품등 | 1) 법 제21조(수입검사)에 따른 정밀검사,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 25조(출입·검사·수거)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 |
| 3등급 수입식품등 | 1) 특별관리영업자*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* 관련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제3호 2)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*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 제조업소(수출업소 또는 해외작업장)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* 관련: 「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|

Q 3. 검사의뢰가 가능한 민간 시험·검사기관은?

○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민간 시험·검사기관은 「식품·의약품 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전문 시험·검사기관이며, 아래 7개 기관으로 의뢰 가능합니다.

- 다만,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(마약이나, 검사장비 및 시약 등이 없는 경우) 지방식약청에 의뢰 가능합니다.

▶ **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(7개 기관)**

| 연번 | 기관명 | 소재지 | 전화 | 시험검사항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|
| 1 |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|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(포일동) | 02-3470-8200 |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, 식품조사처리확인, 방사능 |
| 2 |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원 |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(대연동) | 051-628-7915 |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 |
| 3 | (주)한국분석기술 연구원 |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67 해광빌딩(초량동) | 051-466-1231 |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 |
| 4 | (사)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번지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A-B03호, B101~102호, B301~302호 | 031-628-2400 |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방사능, 유전자변형식품, 식품조사처리 확인 |
| 5 | 한국에스지에스(주) |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, 301호, 302호, 303호, 304호, 305호 | 031-689-8612~7 |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, 방사능 |
| 6 | (주)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(상일동) 8층, 9층 | 02-2140-3515 |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동물용의약품 |
| 7 | (주)캠바이오 |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80 | 051-711-7170 | 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 |

Q 4.

상기 Q3에서 말하는 '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'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?

- ① 마약류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및 방사능 검사와 ② 민간 시험·검사기관 전부 또는 일부가 검사장비 및 시약 등의 문제로 검사항목 전체 또는 일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, 민간 시험·검사기관 검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분·관리합니다.

| 검사 수행 여부 구분 | 검사의뢰 기관 |
|---|--|
| ✓ 품목별 검사항목이 7개 모든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| • 지방청 시험분석센터 |
| ✓ 품목별 검사항목이 5개 이상의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경우 | • 민간 검사기관 |
| ✓ 품목별 검사항목이 4개 이하의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한 경우 | • 검사기관 영업자 선택 가능 ① 민간 검사기관 + 지방청 시험분석센터 ② 민간 + 민간 검사기관 ③ 지방청 시험분석센터 |

- 민간 시험·검사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과 항목은 [수입식품 정보마루](#) ([수입식품 정보마루 > 알림자료 > 공지사항](#)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Q 5.

정밀 중점검사항목 이외에 위해정보 등 지시검사에 따른 추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, 어느 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해야 하나요?

- 위해정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가 상기 Q2에 따른 정밀검사의 중점 검사항목과 다른 경우,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사의뢰 가능합니다. (다만, 위해정보 등의 지시 검사항목이 정밀 중점검사항목과 동일한 경우 민간 시험·검사기관 의뢰)

- ① 중점검사항목은 민간 검사기관으로,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는

지방청으로 각각 의뢰 (검체는 각각 수거)

* 예) 지방청 시험분석센터 + 민간 검사기관 동시 의뢰 시 : 검체수 2개

② 지방청으로 전체 의뢰 (중점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납부 필요)

③ 민간 시험·검사기관으로 전체 의뢰 (단, 이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항목이 시험가능한지 확인 필요)

Q 6.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?

○ 검사수수료는 각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지방청 시험분석센터로 의뢰되는 경우 관련 수수료 규정*에 따라 부과됩니다.

*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 제2020-107호, 2020.11.2.)

Q 7. 수입 영업자의 비용 절감, 편익 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?

○ 수입 수산물은 과거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2.3.의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밀검사 및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나, 현재는 부적합 이력, 동시 다성분 분석 가능 여부, 위해정보 등을 고려하여 '중점검사항목*'을 선정·운영하고 있으며, 수입축산물의 경우 감시항목은 지방식약청에서 검사할 계획입니다.

* 수산물에 대한 중점검사항목 선정·운영 시 민간 검사의뢰 수수료 조정 기대

○ 참고로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은 수출국 정부는 물론, 부처 간(수산물 품질관리원 등) 전자 수입위생증명 교환* 확대, 수입 축산물 수입신고 처리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민원 편의 도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.

* 종이 위생증명서 우편 송부·수신 확인 등 행정비용(비용·시간) 감소, 통관 업무 효율화로 보세창고 보관기간 단축 및 빠른 물류 회전 등 기대